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탐라영재관 계약직(사감) 공개채용 재공고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위탁 대행사업인 탐라영재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감(男) 공개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.

※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21-112호 관련,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어 재공고 실시

2021년 06월 03일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□ 채용인원

구분	분야	인원	주요업무
계약직	탐라영재관 사감(男)	1명	· 관생관리 및 생활지도, 상담, 업무일지 등 작성관리 · 관생의 후생 및 애로사항 해결 · 기숙사 예찰 등 관리 · 기타 관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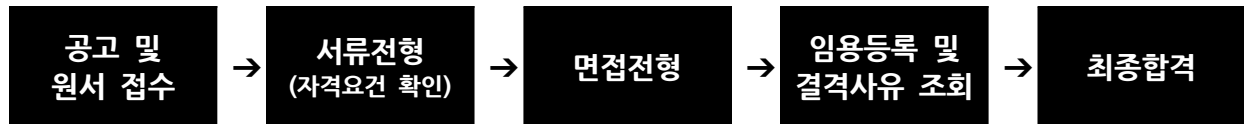
□ 근무조건

- 계약기간: 임용일로부터 2022.08.30.까지
 - 근무장소: 탐라영재관(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)
 - 급여수준: 31,900천원/년 상당
 - 근무형태: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(09:00 ~ 익일09:00)
 - 휴게시간: 11시간(주간 3시간, 야간 8시간)
- ※ 1. 공사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후 채용 (단, 감시·단속적 근로자 기준에 따름)
2. 근무형태 및 시간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으며,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
3. 계약기간은 상기의 기간으로 하되,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도래 시, 그 기간까지로 함
4. 계약기간 연장은 대행사업 위탁기간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 가능
5. 급여수준은 각종수당 및 명절휴가비 500천원*2회 포함된 금액이며 평가급 등 제외된 금액임)

□ 자격요건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청소년 보호지도 및 고충을 선도할 수 있는 자
 - 상담전문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상담역으로 근무한 자
 - 타 기숙사 사감 등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
- 우리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□ 채용절차 <정부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 실시>



※ 서류전형을 통해 자격요건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적격자 전원 합격하며, 면접전형을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

□ 전형별 세부사항

- 원서접수: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성명, 연락처 등 최소 사항만 수집하며, 가족사항, 출신지, 학력 등의 편견요소 기재 금지
- 서류전형: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심사위원이 자격요건 적격여부 확인
- 면접전형
 - 블라인드 면접, 일대다 면접 실시(응시자 1, 면접관 多)
 - 면접점수 70점 이상 획득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 - 평가항목: 사고와 자세, 청렴도 및 신뢰도, 조직 및 직무 적합성, 책임감 및 적극성, 협업성 및 희생정신 등
 - 동점자 처리: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▷ 장애인 ▷ 다문화가정 ▷ 북한이탈주민 순으로 우선 선발

□ 전형일정(예정)

구분	일정(예정)	비고
원서접수	06.03.(목) ~ 06.13.(일)	18:00 까지
서류제출	06.03.(목) ~ 06.14.(월)	
서류전형(자격요건 확인)	06.16.(수)	
면접전형	06.19.(토)	제주에서 실시
임용 등록 및 결격사유 조회	06.21.(월) ~ 06.25.(금)	
임용	07.01.(목)	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자 편의를 돕기 위한 예정일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전형별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정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

○ 원서접수

- 접수기간: [2021.06.03.\(목\) ~ 2021.06.13.\(일\) 18:00](#)
- 접수방법: [온라인\(www.jpdc.co.kr\) 접수](#)
 - ※ 온라인 접수만 인정하며, 우편/이메일/직접방문 등 접수 불가
 - ※ 기존 공고에 접수한 경우에도 재접수하여야 함

○ 서류제출

- **제출기간 내 원서접수자 전원 제출**하며, 제출한 서류를 통해 향후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적격여부를 확인
-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응시자 요청 시 반환하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

- 제출대상: 원서접수자 전원
- 제출기간: [2021.06.03.\(목\) ~ 2021.06.14.\(월\) 18:00](#)
- 제출방법: [본인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제출](#)
- 제출장소: [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](#)
 - ※ 주소: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330 C동 2층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
 - ※ 서류제출 관련 문의: 채용담당자 (064-780-3514)
- 제출서류

제출서류	용도
◦ 경력증명서 ◦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※ 자격요건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· 상담전문기관 단체에서 1년 이상 상담역으로 근무한 자 · 타 기숙사 사감 등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	자격요건 확인
◦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증명서 ◦ 장애인 사실 확인서 또는 복지카드 ◦ 가족관계증명서 (다문화가정 증빙) ◦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	동점자 확인 (대상자에 한함)

※ 제출한 서류를 통해 향후 서류전형 시 자격요건 확인 예정

※ [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](#)에 한하며, 응시자 주민등록번호 미수집

□ 기타 유의사항

-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.
-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접수하여야 하며,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의 동시 접속 등으로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되지 않으니 여유를 두고 접수하시기 바람
- 채용사이트 시스템 여건으로 인해 기존 공고에 지원한 응시자도 재접수하여야 하는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접수 시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접수번호가 송부되어야 접수가 완료된 것이며, 지원서 기재 착오/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있음
- 탐라영재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공고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으며, 채용절차 실시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응시분야에 관련이 있는 경우 한해 작성
-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,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,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미표기 또는 마스킹 처리
- 근무지는 서울 강서구 소재 탐라영재관이며, 입사 후 근무지 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하며, 별도 숙소가 제공되지 않음
- 임용 예정일 이후 근무지(탐라영재관)로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-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-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되며, 합격 취소한 날부터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
- 자격요건 확인 결과 부적격자인 경우 면접전형 결과에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
-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및 허위 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채용 취소 또는 해당분야 결원 발생 시,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동안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 여부 결정 가능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 시 반환하되, 온라인으로 등록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.
(제출서류 반환 요청 시 붙임2 서식 작성 후 제출)
- <문의>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채용담당자 (☎ 064-780-3514)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
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〈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〉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6의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
8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기피자

[붙임2]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
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